

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-51호

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, 자유공원 주변지역 지구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라서 추진 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정비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: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, 자유공원 주변지역 지구)결정(변경)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(☎ 440-4623), 중구청 도시개발과(☎ 760-7516)에 갖추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7. 3. 13.

인천광역시장

1. 결정(변경)취지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계획

2. 위 치

가.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: 중구 향동6가 1번지 일원

나. 자유공원 주변지역 지구: 중구 전동 34-18번지 일원

3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
가.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

○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도면표시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m ²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-	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	중구 향동 6가 1번지 일원	471,476	감) 598	470,878	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사유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위치	면적 (m ²)	변경사유
변경	-	중구 향동 6가 1번지 일원	감) 598	◦자유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도로로 분리되고, 고저차 등에 의한 지형여건을 감안할 때 연결한 자유공원 주변지역 지구에 편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구역에서 채택

○ 용도지구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 치	면적 (m ²)	연장 (m)	폭원 (m)	최초 결정일	비 고
기정	1	미관 지구	역사 문화	중구 향동 6가 1 일원	471,476	-	-	'03. 5.28	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동일
변경	1	미관 지구	역사 문화	중구 향동 6가 1 일원	470,878	-	-	'03. 5.28	

■ 용도지구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지구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미관지구 (역사문화미관지구)	◦면적변경: 감 598m ² (471,476m ² → 470,878m ²)	◦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와 동일하게 결정된 미관지구를 지구단위계획 구역 조정 내용에 맞춰서 변경

나. 자유공원 주변지역 지구

○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도면 표시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m ²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-	자유공원 주변지역	중구 전동 34-18번지 일원	600,090.2	증) 598	600,688.2	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사유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위치	면적 (m ²)	변경사유
변경	-	중구 전동 34-18번지 일원	증) 598	자유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도로로 분리되고, 고저차 등에 의한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구역으로 편입

○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

-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(신설)

가 구		획 지		필 지			비 고
번호	면적 (m ²)	위치	면적 (m ²)	위 치		면적 (m ²)	
C-1-05-1	593.8	-	-	전동	34-18	19.8	
				전동	34-28	9.0	
				전동	34-29	62.5	
				전동	34-30	0.7	
				전동	34-31	4.0	
				전동	34-32	19.2	
				전동	34-33	43.8	
				전동	34-34	17.5	
				전동	34-38	14.9	
				전동	34-41	30.4	
				전동	34-47	12.7	
				전동	34-70	158.6	
				전동	35-10	168.1	
전동	35-15	32.6					

-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(신설)

도 면 번 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
C-1-05-1	전동 34-18일대 (결정도면 참조)	용 도	건축물 용도분류표상 R1
		건 폐 율	· 60% 이하
		용 적 율	· 200% 이하
		높 이	· 10m 이하
		건 축 한 계 선	-

4. 지형도면: 별첨(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: 시보게재 생략)